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356호 2018. 4. 30(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54호 도시관리계획(가좌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시설:녹지)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5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4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645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653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1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54호

도시관리계획(가좌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시설:녹지)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가좌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시설:녹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 4.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가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1. 계획취지 : 도시관리계획(가좌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2. 위 치 : 서구 가좌동 230번지 일원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	가좌 지구단위계획구역	서구 가좌동 230번지 일원	321,958.9	감) 5.8	321,953.1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변경사유	비고
변경	-	서구 가좌동 230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남측 연결도로(중로3-122호선) 지구계 불부합 구간 조정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조건 반영을 위해 중로3-122호선 선형조정

4.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도로 : 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면적)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122	12 (12~23)	국지 도로	901.9	대2-32	대2-35	일반 도로	-	1977.3.31 (인고제73호)	16,519.5㎡
변경	중로	3	122	12 (12~23)	국지 도로	901.9	대2-32	대2-35	일반 도로	-		16,512.2㎡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중로3-122	중로3-122	◦도로선형 조정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교통처리계획 수립을 위해 도로 선형변경

5.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6. 고시도면 : 게재생략(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열람 가능)

□ 도시관리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조서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2. 위 치 : 서구 가좌동 305-5번지 일원

3. 면적 또는 규모

○ 도시관리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 경	③	녹지	완충녹지	서구 가좌동 305-5	79,439	증) 5.8	79,444.8		

○ 도시관리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③	녹지	· 완충녹지 면적변경 - 면적 : 79,439 → 79,444.8m ²	· 중로3-122 선형변경에 따른 완충녹지 면적변경

4. 지형도면 : 게재생략(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8-5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04.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도곡로 214 외1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4. 30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8-04-30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1	인천광역시 서구 도곡로 214 (대곡동)	20130730	도치울이라고 불리던 옛지명 활용	
2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431-2, 431-3, 432-1	인천광역시 서구 설원로 131 (대곡동)	20130730	자연부락 명칭 반영	
3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222-5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 263-1 (대곡동)	20130730	법정동 명칭 반영	
4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222-6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 263-2 (대곡동)	20130730	법정동 명칭 반영	
5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66	인천광역시 서구 한서로 58-2 (백석동)	20171025	한들지구의 서쪽에 위치	
6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51	인천광역시 서구 한서로 89 (백석동)	20171025	한들지구의 서쪽에 위치	
7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43-4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54번길 36 (가좌동)	20090706	가재울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32-10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174번길 8-3 (원당동)	20081231	고산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47-4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78번길 52-8 (당하동)	20081231	고산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33-3	인천광역시 서구 대평로56번길 21 (연희동)	20090922	대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24-8, 124-19, 124-2	인천광역시 서구 사월로37번안길 39 (왕길동)	20090922	사월로37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는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01-29	인천광역시 서구 사월로76번길 24 (왕길동)	20090922	사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99-2	인천광역시 서구 사월로76번길 25 (왕길동)	20090922	사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1-52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78번길 68-35 (원창동)	20090922	북항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81-153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12번길 9 (경서동)	20130730	보석로 시작지점부터 약 1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 제2018-645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의거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4.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18. 4. 30. ~ 2018. 5. 14.(15일간)
2. 공 고 내 용

1. 행정처분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대상차량	등록번호	인천35러1807외 108건(붙임 참조)		
	차명			
3. 운행정지사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할관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	교통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4877, FAX 032-560-2793)		

3. 유의사항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3)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무등록 자동차)를 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서구청 교통민원과 차량관리팀(☎ 032-560-48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비고
1	인천35러1807	이중*	2018.04.23	
2	29버0416	김영*	2018.04.23	
3	32서6564	김병*	2018.04.23	
4	13우1544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5	35조7061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6	12고4524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7	31오8843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8	56어3618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9	53마7123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10	50루6738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11	62구6972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12	34오6235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13	13러1912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14	39루5928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15	34오6329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16	18나6795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17	20라2781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18	14무9037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19	50무4997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20	70구9203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21	72고6703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22	49로4992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23	76보9175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24	32우5374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25	17모9677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26	32누4070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비고
27	30너4521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28	09도9163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29	45노7153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30	34오6599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31	05가8717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32	42소7554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33	14마3661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34	34오6520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35	09누8051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36	32우5386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37	34오6693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38	30누6480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39	01너5191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40	47보4241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41	62구6867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42	15라4938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43	46누6823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44	50부2029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45	52마9126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46	09고7702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47	49노2476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48	21로7918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49	22루4330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50	10서1872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51	57다2210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52	37마4031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53	33조3743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54	07소6709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55	34오6727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56	34오6578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57	19부6155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58	58머1864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59	26누8611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비고
60	28거1554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61	56조9919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62	34오6466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63	10노6684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64	61루7986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65	29다5520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66	34오6735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67	34오6569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68	16머8172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69	26보8393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70	34오6668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71	41도4085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72	34오6741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73	36부3742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74	34오6555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75	32우5407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76	83소8817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77	70어1200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78	76보9169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79	48수4611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80	63두7812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81	34오6607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82	01누2549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83	10로7424	(주)요한큐엠소프*	2018.04.18	
84	86도1274	선창건*(주)	2018.04.17	
85	38우0623	김상*	2018.04.17	
86	60가0470	임승*	2018.04.16	
87	경기37도9806	이기*	2018.04.16	
88	75모9061	정승*	2018.04.12	
89	08너2113	신동*	2018.04.12	
90	24다1461	이은*	2018.04.10	
91	08두0112	신승*	2018.04.06	
92	25조4363	백수*	2018.04.06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비고
93	26두4807	김중*	2018.04.05	
94	10주9198	이창*	2018.04.05	
95	48보4487	한성이엔*(주)	2018.04.02	
96	82가8057	한성이엔*(주)	2018.04.02	
97	울산80머8725	김귀*	2018.03.30	
98	인천72나6204	김봉*	2018.03.29	
99	인천35너6882	정순*	2018.03.28	
100	인천31모1816	최미*	2018.03.28	
101	17구7101	장춘*	2018.03.27	
102	서울72루7256	김태*	2018.03.27	
103	15소2804	김경*	2018.03.23	
104	51더0204	김경*	2018.03.23	
105	32부9155	김경*	2018.03.23	
106	52무7571	김지*	2018.03.23	
107	13두2597	박효*	2018.03.22	
108	26누5599	최유*	2018.03.21	
109	03구3605	정승*	2018.03.19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653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관련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4.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8587호, 2018. 4. 17.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28590호, 2018. 1. 17. 시행)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131호, 2018. 1.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행위 기준과 서식을 정비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무관련자인 특수관계사업자의 범위 마련(안 제2조)

-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에 대한 소유 관계, 소유 비율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사업자의 범위를 정함(운영지침 제9조 관련)

| 특수관계사업자 범위(운영지침 제9조제1항) |

- **소유 관계** : 소유 명의와 관계 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
- **소유 비율** :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
 1.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안 제5조)

- 공무원의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행동강령 제5조 관련)
-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 재배정 등 신청 서식 및 방법, 신청 대상이 된 공무원의 의견서 서식 등 구체화(운영지침 제10조 관련)

다. 구청장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5조의2)

- 구청장은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행동강령 제5조의2 관련)
- 고위공직자의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서식 마련(운영지침 제11조 관련)

라.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안 제5조의3)

- 이해충돌 유발 우려가 있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노무·조언·자문 제공 후 대가수수, 다른 직위에의 취임 등 금지(행동강령 제5조의3 관련)

마. 가족 채용 제한(안 제5조의4)

- 공무원의 가족을 소속·산하기관에 채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행동강령 제5조의4 관련)

바.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5조의5)

- 공무원 본인, 가족 등과 소속·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행동강령 제5조의5 관련)

사.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안 제5조의6)

- 재직자가 소속기관의 2년 이내의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 시 신고(행동강령 제5조의6, 운영지침 제12조 관련)

아.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안 제12조제3항)

- 공무원은 민간에 대해 부정청탁 금지(행동강령 제11조 관련)

자. 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 및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안 제15조)

- 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와 선물범위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함

차. 사적 노무 요구 금지(안 제14조의2)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으로 노무 제공받는 행위 금지(행동강령 제13조의2 관련)

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및 신고사항 정비(안 제17조)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함
- 외부강의등의 유형, 요청사유를 사전 신고 사항에서 삭제(부정청탁시행령 제26조제1항, 운영지침 제17조제3항 관련)
- 사후 보완 신고 기산점 조정 및 신고기간 연장(부정청탁시행령 제26조제2항 관련)

- 보완 신고 기산점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에서 사전 신고 시 제외된 사항을 ‘안 날부터’ 로, 신고기간을 ‘2일’ 에서 ‘5일’ 로 연장

타.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안 제18조)

- 직무관련자 등과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 거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체결 시 신고(행동강령 제16조 관련)
- 공무원 자신,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 등으로부터 금전차용 등 거래시 신고 내용, 신고 방법(서면) 등 구체화(운영지침 제20조 관련)

파. 기록 보관·관리 방법(안 제21조)

- 신고, 신청 등 제출된 기록의 보존기간 및 관리방법(운영지침 제22조 관련)

- 전자 매체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등

하.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5.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서구청)
인천광역시 서구청 감사실 (전화 032-560-4075, FAX 560-270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구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감사실(032-560-4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8587호, 2018. 4. 17.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590호, 2018. 1. 17. 시행) 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131호, 2018. 1.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행위기준과 서식을 정비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무관련자인 특수관계사업자의 범위 마련(안 제2조)

-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에 대한 소유 관계, 소유 비율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사업자의 범위를 정함(운영지침 제9조 관련)

| 특수관계사업자 범위(운영지침 제9조제1항) |

- **소유 관계** : 소유 명목과 관계 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
- **소유 비율** :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
 1.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안 제5조)

- 공무원의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행동강령 제5조 관련)
-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 재배정 등 신청 서식 및 방법, 신청 대상이 된 공무원의 의견서 서식 등 구체화(운영지침 제10조 관련)

다. 구청장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5조의2)

- 구청장은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

출(행동강령 제5조의2 관련)

- 고위공직자의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서식 마련(운영지침 제11조 관련)

라.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안 제5조의3)

- 이해충돌 유발 우려가 있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노무·조언·자문 제공 후 대가수수, 다른 직위에의 취임 등 금지(행동강령 제5조의3 관련)

마. 가족 채용 제한(안 제5조의4)

- 공무원의 가족을 소속·산하기관에 채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행동강령 제5조의4 관련)

바.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5조의5)

- 공무원 본인, 가족 등과 소속·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행동강령 제5조의5 관련)

사.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안 제5조의6)

- 재직자가 소속기관의 2년 이내의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 시 신고(행동강령 제5조의6, 운영지침 제12조 관련)

아.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안 제12조제3항)

- 공무원은 민간에 대해 부정청탁 금지(행동강령 제11조 관련)

자. 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 및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안 제15조)

- 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와 선물범위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함

차. 사적 노무 요구 금지(안 제14조의2)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으로 노무 제공받는 행위 금지(행동강령 제13조의2 관련)

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및 신고사항 정비(안 제17조)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함
- 외부강의등의 유형, 요청사유를 사전 신고 사항에서 삭제(부정청탁시

행령 제26조제1항, 운영지침 제17조제3항 관련)

- 사후 보완 신고 기산점 조정 및 신고기간 연장(부정청탁시행령 제26조제2항 관련)
 - 보완 신고 기산점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에서 사전 신고 시 제외된 사항을 ‘안 날부터’로, 신고기간을 ‘2일’에서 ‘5일’로 연장

타.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안 제18조)

- 직무관련자 등과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 거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체결 시 신고(행동강령 제16조 관련)
- 공무원 자신,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 등으로부터 금전차용 등 거래시 신고 내용, 신고 방법(서면) 등 구체화(운영지침 제20조 관련)

파 . 기록 보관·관리 방법(안 제21조)

- 신고, 신청 등 제출된 기록의 보존기간 및 관리방법(운영지침 제22조 관련)
 - 전자 매체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등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본청·구의회·직속기관·사업소·동”을 “본청·구의회·직속기관·동”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인천광역시 서구 본청·구의회·직속기관·동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영 제2조제2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3. “금품등”이란 영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특수관계사업자”란 다음 각 목과 같으며, 주식·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의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와 같다)이 단독으로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제4조제1항 중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를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 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으로,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급자에게”로, “아니”를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제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7항에 따라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구청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

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를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로, “민원업무의”를 “민원업무를 수행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7호) 중 “인·허가”를 “인·허가”로, “정책·사업”을 “정책·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구청장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구청장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

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항까지의 행위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구청장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구청장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 관계사업자가 구청장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6제 2항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하는 행위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방법 등) ①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직무관련자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직자에 대한 직무 재배정 등 조치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5조제4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시 해당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5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확인·조치 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 중 “대하여 재산상”을 “재산상”으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8조)제1항 중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을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9조)제1항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직원”을 “임직원”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1조의2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공무원의”를 “공무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와 같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직책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영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금품등의 수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품 등”을 “금품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부강의 등”을 “외부강의등”으로, “금품 등은”을 “금품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금품”을 “금품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 중 “금품 등”을 각각 “금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직무관련공무원 으로서 금품 등”을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으로, “그”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그”로, “행동강령책임관”을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금품 등”을 각각 “금품등”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하고, 제17조를 제16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2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23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오락”을 “오락(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따라 금품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8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직무관련자 거래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

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중전의 제18조)제1항 중 ““외부강의 등””을 ““외부강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외부강의 등을”을 “외부강의등을”로, “외부강의 등의”를 “외부강의등의”로,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행동강령책임관”을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외부강의 등을”을 “외부강의등을”로, “경우 에”를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

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17조(중전의 제18조)제4항 중 “외부강의 등이”를 “외부강의등이”로, “외부강의 등을”을 “외부강의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초과하는 사례금”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으로, “별지 제8호서식으로 행동강령책임관”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8항) 중 “행동강령책임관”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9항) 중 “외부강의 등은”을 각각 “외부강의 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7항”으로, “외부강의 등”을 “외부강의등”으로,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하고, 제20조를 제19조로 하며,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제22조 및 제20조로 한다.

제19조(중전의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직무관련공무원 에게”를 “직무관련공무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제21조 앞에 “제5장 위반 시의 조치”를 삭제한다.

제20조 앞에 “제5장 위반 시의 조치”를 삽입한다.

제22조(중전의 제21조)제1항 중 “외부강의 등”을 “외부강의등”으로,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기록 보관·관리) ① 구청장은 제5의2, 제5조의6, 제6조, 제25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 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종전의 제22조)제1항 중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별지 제12호서식으로 본인”을 “본인”으로, “제시해야”를 “제시하여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동강령책임관”을 “구청장”으로,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금품 등”을 각각 “금품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품 등을”을 각각 “금품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품 등”을 “금품등”으로,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품 등”을 “금품등”으로, “행동강령책임관”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 에”를 “경우에”로,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경우 : 금품 등”을 “경우: 금품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품 등”을 “금품등”으로, “경우 :”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 : 별지

제15호서식”을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으로, “금품 등”을 “금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을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으로, “금품 등을”을 “금품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금품 등”을 “금품등”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27조 제목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본청·구의·직속기관·사업소·동”을 “본청·직속기관·사업소·동”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감사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21호서식”으로,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22호서식”으로,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23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표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청장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구청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및 별지서식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1. 사례금 상한액 : 40만원

단,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 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나.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지 제4호서식]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구청장 귀중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6호 서식]

업무 담당 공직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구청장 귀중

[별지 제7호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 · 조치 내역서

접수번호	접수일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관련 사항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확인 사항		
조치 내역		
기타 참고사항		

확인점검일

확인점검자

(인)

[별지 제8호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타					
작성일자 : 20					
신고자 :					(인)

[별지 제9호 서식]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 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 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인 퇴직공직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퇴직 전 소속		퇴직일	
접촉 일시			장소	
접촉 유형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			
접촉 사유				
비용 부담자				
참고서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 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1호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주소	연락처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 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0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서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방문 [] 전화 [] 기타()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2호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신고자	소 속		성 명	
	직급(위)		전화번호	
신 고 내 용				
일 시		장 소		
참석자	※ 소속, 직책, 성명 기재			
비 용 부 담	※ 본인여부, 카드 사용여부 등 기재			
사 유				
비 고				

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 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다.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법인·단체를 말한다.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영 제2조제2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3. “금품등”이란 영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특수관계사업자”란 다음 각 목과 같으며, 주식·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의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와 같다)이 단독으로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

라.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인천광역시 서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해당 공무원의 하급자

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나. 감사·인사·심사평가·상훈 등 단위 업무담당자와 해당 공무원

다. 인사·감사·예산·조직·세정업무 등 각종 평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과 다른 행정기관의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라.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위임·위탁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동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

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

-----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급자에게 --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

② -----

----- 행동강령책임관-----

-----.

③·④ (생략)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바로 위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 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자신의 직계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제7항에 따라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

1.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삭 제>

<삭 제>

<삭 제>

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6. (생략)

7.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8.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바로 위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바로 위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3.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4. ----- 인·허가-----
----- 정책·사업-----

5. (현행 제8호와 같음)

<삭 제>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삭 제>

제5조의2(구청장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구청장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 3제1항제1호부터 제4항까지의 행위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구청장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를」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구청장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

자가 구청장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6제2항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

니 된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하는 행위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방법 등) ①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신 설>

직무관련자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직자에 대한 직무 재배정 등 조치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5조제4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시 해당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

제6조 (생략)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협박 또는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5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확인·조치 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재산상 -----
-----.

제9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 자신
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 다른 사람-----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③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제11조 (생략)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② (현행과 같음)

③ -----

임직원 -----

-----.

제11조·제11조의2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 공무원
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와 같다)의 --.

② -----

----- 공무원 -----

다.

<신 설>

<신 설>

-.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직책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영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4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③ 제17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써 별표 1에 따른 가액 범위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

----- 금품등-----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7조의 외부강의등-----

----- 금품등-----
은 -----

-----.

1. -----

----- 금품등-----

2. -----

----- 금품등-----

3. -----

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 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 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 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 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 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금품 등 수수의 신고) 공무원이 제1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행동강

-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 등-----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그 -
- 구청장-----.

⑤ -----

-----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

-----.

⑥ -----

금품 등-----

-----.

<삭 제>

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

지)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
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행동
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5호서
식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골프 종료 후 즉시 신고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사항을 별지 제
6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
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에서 “사행성 오락”이
란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
패에 따라 금품 등 경제적 이익
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제16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

지) ① -----
-----.

----- 별지 제22호서식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별지 제2
3호서식-----
--.

④ ----- 오
락(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
패에 따라 금품 등 경제적 이익
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삭 제>

말한다.

<신 설>

제18조(직무관련자 거래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

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

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신고가 곤란한 경우에
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
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
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
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
다.

제18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
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

제17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
수 제한) ① -----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 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 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 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 (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

등이 -----

- 외부강의등을 -----
-.

⑤ -----
-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구청장-----

-----.

<삭 제>

<삭 제>

게 알려야 한다.

⑧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 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월 3회까지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검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⑩ 공무원은 제9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 「민법」 제 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

⑥ -----

----- 구청장
-----.

⑦ -----
----- 외부강의등은
-----.

----- 외부강의등은 -----
-----.

⑧ ----- 제7항-----

외부강의등-----
-- 구청장-----

--.

<삭 제>

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도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제19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
----- 직무관련공무원에게 -----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

2. ~ 4. (생략)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신설>

<신설>

제21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1호

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 4. (현행과 같음)

<삭제>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21조(기록 보관·관리) ① 구청

장은 제5의2, 제5조의6, 제6조, 제25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 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
----- 외부강의등 -----

----- 별지 제21호서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2조(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① 모든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3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④ (생략)

제25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

식-----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① -----

----- 별지 제20호서식-----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본인-----
----- 제시하여야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

----- 구청장-----
----- 별지 제14호서식-----
-----.

- 1. ----- 금품-----

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

금품-----

② -----

금품-----

----- 금품 -----

-----.

③ ----- 금품
등-----
----- 별
지 제15호서식-----
-----.

④ -----

금품-----
----- 구청
장-----
-----.

1. ~ 3. (생략)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5조제 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4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1. ~ 3. (현행과 같음)

⑤ -----

경우에-----
----- 별지 제16호서식-----

-----.

1. -----
----- 경우: 금품등-----

2. ----- 금품등-----

----- 경우: -----

3. -----

----- 경우: 별지 제17호서식-----
금품등-----

4. (생략)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교육) ① 구청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2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 본청·구의·직속기관·사업소·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의 행동강령책임관은 인천광역시 서구 감사실장으로 한다.

②·③ (생략)

4. (현행과 같음)

⑥ -----
-----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서식-----

----- 금품등을 -----
-----.

⑦ ----- 금품등-----

-----.

제26조(교육) ① ----- 소속 공무원-----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 본청·직속기관·동 -----

----- 감사실장-----
-----.

②·③ (현행과 같음)